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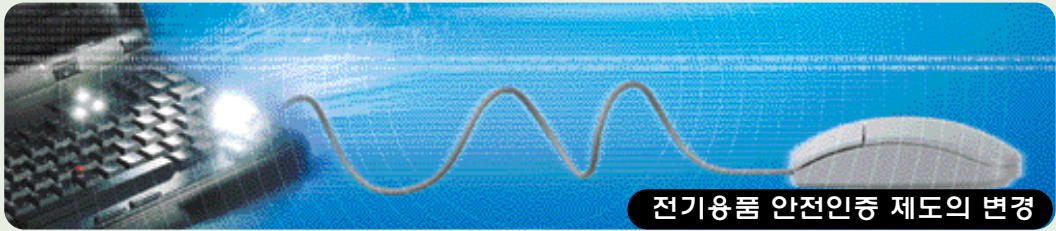
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의 변경

□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

- 불법 전기용품에 대한 벌칙강화
 - 징역 2년 이하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→ 징역 3년/벌금 3,000만원
- 수입 중고 전기용품안전검사 제도 도입
- 정기공장검사 강화
 - 년 1회 정기검사 및 제품심사 실시,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도입
- 부적합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(개선명령, 표시의사용금지, 인증취소) 강화
- 주요 위임업무의 시도지사 이양
 - 전기용품의 개선/파기/수거, 환불/수리 등의 명령, 과태료 부과/징수 등
- 불법전기용품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(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) 운영

□ 안전인증 공장검사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

- 품질문서(사규, 규정, 규격, 절차서 등)의 내용 부실 및 미보유
 - 규정 제정후 개정 등의 Up-date 이력이 거의 없음
 - 자체 검사(수입(원자재), 공정(중간), 출하(제품)검사) 규정의 부실
 - 과거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시험/검사규격의 개정 필요
 - 공장검사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주요 규정의 미보유
 - 부적합품 관리 규정, 내부감사 규정, 고객불만처리 규정 미보유
 - 인증제품의 승인부품의 변경관리규정 미비 등
- 표시사항(Label) 및 사용설명서 경고문 미흡
 - 필수 표시사항의 미흡/누락
 - 인증번호/인증마크, 제품명/모델명, 제조자, 정격,제조일, A/S전화 등
 - 사용설명서에 포함될 표시사항 및 각종 경고문구의 미흡



- 자체검사기록(성적서)의 부실 및 부재
 - 전기용품안전인증 운용요령에서 요구하는 시험항목 불일치 및 누락
 - 자체검사 시험항목의 통일화 필요
 - 주기적인 자체검사 기록이 거의 없거나 허위기록 보관
 - 분기별 및 년 1회 이상의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보관(3년)

- 측정 장비 및 제조설비 보유 및 관리 미흡
 - 측정장비 및 제조설비 관리 규정 미흡(미보유)
 - 설비/장비의 이력카드(대장), 성능점검기록 미흡
 - 검교정 계획 및 교정 성적서, 관리표찰(교정필증 등)의 관리 부실
 - 운용요령에서 정한 필수 보유설비 불만족

- 인증제품의사양변경관리미흡
 - 인증서상에 표기된 주요 부품, 회로의 변경에 따른 파생모델 미관리
 - 회사규정에서 주요 안전부품의 변경절차 미보유/미흡

□ 국내 시판품 조사현황

- 목적
 -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, 판매 단계의 제품이 요구기준에 부합되고, 인증 취득시 사용된 안전부품을 비롯한 제품사양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시험, 검토하여 부적합 제품의 개선 및 재발사례 예방

○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현황

구 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품목/업체수	15/343	6/103	28/234	25/408
불량율	63%	70%	28%	32%

- 화재, 감전 등 문제 제품의 집중관리에 따른 불합격 개선 효과
 - 형광등 안정기 ; 90%('02년) → 62%('04년)
 - 전기요 ; 100%('02년) → 55%('04년)
 - 전기스토브 ; 94%('02년) → 25%('04년)